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678
----------	------------

제안일자 : 2022년 3월 31일

제안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대항 권한으로 ‘이의제기’와 ‘이의신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은 약식재판에 대한 대항권이며 ‘이의제기’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한 용어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이의신청”을 “이의제기”로 함. (안 제4조제3항)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3항 중 “이의신청은”을 “이의제기는”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p> <p>①·② (생략)</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u>부과·징수</u>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p>	<p>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 부과·</p> <p><u>징수 및 이의신청은</u> ---</p> <p>-----</p> <p>-----.</p>	<p>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p> <p>①·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p> <p>----- 부과·</p> <p>징수 및 <u>이의제기는</u> ---</p> <p>-----</p> <p>-----.</p>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중 “부과·징수”를 “부과·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과 및 징수는”을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과태료의 <u>부과·징수</u>)</p> <p>①·② (생략)</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u>부과·징수</u>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p>	<p>제4조(과태료의 <u>부과·징수 등</u>)</p> <p>①·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 부</p> <p><u>과·징수 및 이의제기</u>는 -----</p> <p>-----.</p>